

보도시점 2026.4.29.(수) 15:00
< 4.30.(목) 조간 >

배포 2026. 4. 29.(수)

2026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합니다.

- 4.30일부터 '26년도 상반기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신청 접수 시작
-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정부는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에 대해 '26년도 신규 선정절차에 착수한다.

선도사업자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서비스 등의 도입·생산·제공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소관 부처에서 인정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다. 공급망기본법 시행('24.6월) 이후, 현재까지 총 187개의 선도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지정기간은 최초 선정일로부터 기본 3년이다.

올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30일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6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자에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사업 내용과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계, 도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 안정화 추진계획, 재무 및 이행능력 등에 관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5.29일까지 소관 부처에 제출하여 심사받아야 한다.

현재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서비스의 안정적 도입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으로, 정부는 '수입국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수입 대체 기술개발', '비축 물량 확대' 등에 대한 안정화 계획을 제출하는 기업 등을 선도사업자로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자는 공급망 안정화기금의 우선 지원대상으로서 수출입은행의 별도 여신심사를 거쳐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업부(www.motie.go.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유 등 핵심자원 관련 기업은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supply@k-resources.or.kr / 02-3453-4058), 반도체·비철금속 등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은 소부장넷(<https://www.sobujang.net> / 02-3460-3322)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총괄>	재정경제부 공급망대응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지은 (044-215-7880)
		담당자	주무관	신동엽 (sdy62@korea.kr)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관 자원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민영 (044-203-5240)
		담당자	사무관	성치운 (044-203-5254)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덕중 (044-203-4910)
		담당자	사무관	김대건 (044-203-491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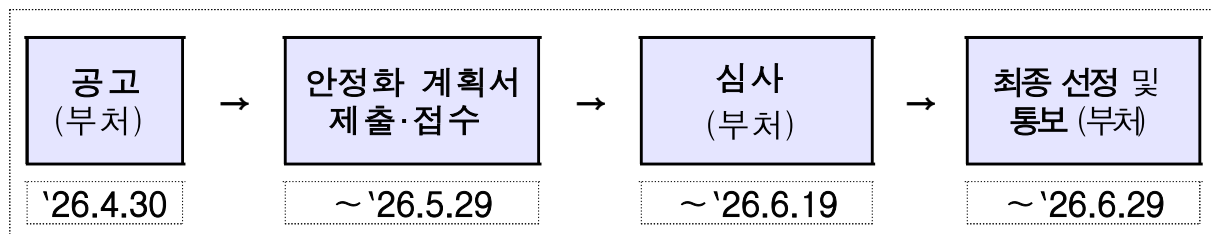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개요

- ☐ **(신청기간)** '26.4.30(목) ~ '26.5.29(금)
- ☐ **(선정대상)**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 **(선정방법)** 사업자가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가 적격 여부를 판단

<선도사업자 선정 기준>

- 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성]**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이 있을 것
- ②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해당 사업 계획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해당 시행계획의 이행에 적합한 내용일 것
- ③ **[기본적인 재무여건]** 자금조달 계획, 현금흐름 창출 능력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적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 (선정 일정)



- ☐ **(지정기간)** 3년 (다만, 소관 부처에서 사업 일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장 5년까지 가능)
- ☐ **(선도사업자 지원)** 공급망안정화 기금 중점지원 + 정책지원
 - **(공급망 기금)** 선도사업자 우선·중점 지원 및 우대금리 적용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우대 및 수수료 경감 가능
 - **(정책지원)** ①수입처 다변화, ②생산 확충, ③R&D, ④비축확대 관련 재정·세제·금융지원, 특허조사 분석 등 가능 ※ 실제 지원여부는 사업별로 검토할 예정
- ☐ **(의무사항)** 자료제출 및 공급망 현황조사 등에 협조